

의안번호	2214005
의 퇴 인	이훈기 의원
회 답 일	2026.01.14.
추 계 번호	25C599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조 1,607억원, 2031년 1조 2,245억원 등 향후 5년간 5조 9,616억원(연평균 1조 1,923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안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1,160,680	1,176,236	1,192,051	1,208,129	1,224,474	5,961,571	1,192,3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1항)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①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조정하고, ②학자금 지원을 확대함
-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학 재학생의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본금을 출연하고 있음
 - 다자녀 장학금은 첫째와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되어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상회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

[표 2] 지원구간에 따른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I 유형		전액	600	440	360	100
다자녀	첫째 둘째	전액	610	505	465	135
	셋째 이상	전액	전액			200

주: 1.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유형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2. 학자금 지원구간은 1~9구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따르고, 기초·차상위구간의 경우 기초·차상위 자격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함

3. 9구간 지원의 경우 2025년부터 도입됨

4. '25년 2학기부터 적용됨

자료: 한국장학재단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①다자녀 기준 조정에 따른 증가분과 ②다자녀 가정 대상 학자금 지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으로 구분하여 산출
 - (다자녀 기준 조정) 개정안 시행 시 자녀 2인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편입되며 해당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하며 지원액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가정
 - 모든 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추계기간 동안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가정
 - (학자금 지원 확대)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고 가정
 - 1~8구간 학생에 대한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이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430만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액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추가재정소요는 등록금과 장학금 지원액의 차액이며,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된다고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다자녀 기준 조정에 따른 증가분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유형 간 지원금 차액에 대상 학생 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지원금 차액)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구간별로 산출
 - (대상 학생) '25년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에 직전 3개년도 재학생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구간별로 산출
 - 재학생 평균 변화율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에서 산출한 값을 적용

[표 3] 구간별 1인당 추가재정소요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다자녀(A)	전액	610	505	465	135
I 유형(B)	전액	600	440	360	100
차액(C=A-B)	—	10	65	105	35

자료: 한국장학재단

[표 4] 구간별 대상 학생 수 전망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1~3구간	161,397	161,337	161,276	161,216	161,156
4~6구간	161,290	161,229	161,169	161,109	161,049
7~8구간	160,922	160,862	160,802	160,742	160,681
9구간	128,235	128,187	128,139	128,091	128,043
합계	611,844	611,615	611,386	611,158	610,929

주: 자녀 2인 가구의 학생으로, 첫째와 둘째를 모두 포함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348억 2,800만원, 2031년 3,343억 2,800만원 등 향후 5년간 1조 6,728억원(연평균 3,345억 7,800만원)으로 추계

[표 5]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1~3구간	16,140	16,134	16,128	16,122	16,116	80,638	16,128
4~6구간	104,838	104,799	104,760	104,721	104,682	523,800	104,760
7~8구간	168,968	168,905	168,842	168,779	168,715	844,209	168,842
9구간	44,882	44,865	44,849	44,832	44,815	224,243	44,849
합계	334,828	334,703	334,578	334,453	334,328	1,672,890	334,57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에 따른 증가분

□ 1인당 평균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지원액의 차액에 대상 학생 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1인당 등록금) 대학정보공시 통계에 따른 1인당 연평균 등록금에 직전 3개년도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6] 1인당 등록금 전망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1인당 등록금	7,340	7,464	7,590	7,719	7,849	37,962	7,59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장학금 지원액) 둘째 자녀에게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이외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

- 1~8구간 학생에 대한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이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430만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여 9~10구간 학생을 대상으로 추계

[표 7] 1인당 추가재정소요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둘째	9구간	2,320	2,382	2,445	2,509	2,575
	10구간	3,670	3,732	3,795	3,859	3,925
셋째 이상	9구간	5,340	5,464	5,590	5,719	5,849
	10구간	7,340	7,464	7,590	7,719	7,84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 학생) '25년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에 직전 3개년도 재학생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구간별로 산출

- 1~8구간 학생에 대한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이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430만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여 9~10구간 학생을 대상으로 추계
-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0구간 재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추정치를 준용
- 재학생 평균 변화율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에서 산출한 값을 적용

[표 8] 대상 학생 수 전망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둘째 ¹⁾	9구간	69,595	69,569	69,543	69,517	69,491
	10구간	113,913	113,870	113,828	113,785	113,742
셋째 이상	9구간	12,514	12,509	12,505	12,500	12,495
	10구간	24,464	24,455	24,445	24,436	24,427

주: 1) 개정안의 기준 조정에 따라 새롭게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는 2인 자녀 가구의 둘째 인원을 포함한 값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258억 5,200만원, 2031년 8,901억 4,700만원 등 향후 5년간 4조 2,887억원(연평균 8,577억 3,600만원)으로 추계

[표 9]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둘째	579,480	590,660	602,025	613,577	625,320	3,011,060	602,212
9구간	161,446	165,708	170,039	174,442	178,918	850,553	170,111
10구간	418,034	424,952	431,985	439,134	446,402	2,160,508	432,102
셋째 이상	246,372	250,873	255,448	260,099	264,827	1,277,620	255,524
9구간	66,820	68,349	69,904	71,484	73,090	349,647	69,929
10구간	179,552	182,524	185,545	188,615	191,737	927,973	185,595
합계	825,852	841,533	857,473	873,676	890,147	4,288,681	857,73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